

廢棄物管理法

[1986年12月31日]
〔法律 第3904號〕

第1章 總 則(1條~8條)
第2章 一般廢棄物(9~20)
第3章 產業廢棄物(21~26)
第4章 營業者 등에 대한指導・監督 등(27~33)
第5章 補 則(34~42)
第6章 罰 則(43~46)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清潔히 함으로써 國民保健의 향상과 環境保全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재・汚泥・糞尿・廢油・廢酸・廢 알카리・動物의 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一般廢棄物**”이라 함은 사람의 日常生活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쓰레기・糞尿 등 產業廢棄物 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產業廢棄物**”이라 함은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汚泥・殘滓物・廢油・廢酸・廢 알카리・廢고무・廢合成樹脂 등 廢棄物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糞尿處理施設**”이라 함은 糞尿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5. “**糞尿淨化槽**”라 함은 糞尿를 沈澱・分解 등의 방법에 의하여 淨化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

하는 施設을 말한다.

6. “**쓰레기處理施設**”이라 함은 埋立・燒却・再生分類・堆肥化 등의 방법에 의하여 쓰레기를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을 말한다.

7. “**污水淨化施設**”이라 함은 糞尿와 生活下水를 함께 처리하는 淨化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埋立・燒却・分解・中和・시멘트固形化 등의 방법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을 安全하게 처리하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9. “**畜產廢水淨化施設**”이라 함은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第3條 [適用範圍] 이 法은 原子力法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市長・郡守는 一般廢棄物 施設을 設置하여 이를 유지・管理하고 처리방법의 개선 등 一般廢棄物處理事業의 능률적인 수행을 기하는 한편, 住民의 清掃意識 함

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市長・直轄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産業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埋立地를 확보하는 등 産業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道知事은 市長・郡守에 대하여 第1項의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技術的 지원을 하고 管轄區域안의 一般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④ 國家는 廉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研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3項의 責務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서울특별市・直轄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廉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

第5條 [清潔의 유지] ① 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清潔히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清潔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市長・直轄市長・郡守가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清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서울특별市長・直轄市長・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場所에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衆便所・公衆用 쓰레기容器 및 쓰레기 積換場을 設置하여 이를 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第6條 [廢棄物의 投棄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의 地域 또는 場所에서 一般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1. 特別清掃地域 및 그 沿岸海域
2. 公園・廣場・道路・港灣・下水道
- 河川・運河・湖沼・山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또는 場所

② 누구든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處理基準 및 方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産業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第7條 [廢棄物의 處理基準] 廉棄物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 및 方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第8條 [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 市・道知事은 環境廳長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廉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廳長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함에 있어서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는 管轄區域 안의 一般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環境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 國家의 廉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章 一般廢棄物

第9條 [特別清掃地域] ① 서울특별市・直轄市・市 또는 邑의 地域을 特別清掃地域으로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市長・直轄市長・市長・郡守(이하 “市長・郡守”라 한다)가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

② 郡守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面의 地域의 전부 또는 일부를 特別清掃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特別清掃地域안의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便所 및 쓰레기容器를 設置하여

이를衛生的으로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2. 서울特別市·直轄市·市·郡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쓰레기를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市長·郡守가 행하는 一般廢棄物의 처리에 적극協力하여야 한다.

第10條 [一般廢棄物처리] ①市長·郡守는 特別清掃地域안에서 排出·集積된 一般廢棄物을 收集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로 하여금 그收集·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特別清掃地域 안에서 事業活動에 수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多量의 쓰레기를排出하는 者는 이를 스스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便所가 設置되어 있는 車輛·船舶 또는 航空機을 連行하는 者 및 移動便所를 設置管理하는 者는 그 便所에서排出되는 糞尿를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基準 및 方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一般廢棄物을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의收集·運搬·燒却·埋立 등 처리에 관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第11條 [一般廢棄物處理業] ①一般廢棄物의收集·運搬·燒却·埋立 등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一般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糞尿收集·運搬業
糞尿를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쓰레기收集·運搬業
쓰레기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3. 糞尿處理業
糞尿處理施設을 갖추고 糞尿를 최종적으로 安全하게 처리하는 營業
4. 쓰레기處理業
쓰레기處理施設을 갖추고 쓰레기를 埋立·燒却·再生分類·堆肥化 등 的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營業

5. 淨化槽清掃業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廉產

廢水淨化施設을 清掃하는 營業

③市長·郡守는 糞尿處理業 및 쓰레기處理業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一般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營業地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⑤一般廢棄物處理業者는 당해 서울特別市·直轄市·市·郡의 條例가 정하는 基準을 초과하여 處理料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第12條 [缺格事由]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一般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期產者
2. 破產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懲役 이상의 刑을 받고 그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一般廢棄物 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取消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法人으로서 그任員 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13條 [許可의 取消 등] ①市長·郡守는 一般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許可를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期間을 정하여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許可를取消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것이 判明된 때
3. 許可를 받은 후 1년 이내에營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 이상 休業한 때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6. 기타 이法 또는 이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市長·郡守는 法人인 一般廢棄物處理業者에 대하여 第12條第5號에 해당하는 사유로 許可取消를 하는 경우에는任員改任에 필요한 6月 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한다.

第14條 [糞尿·쓰레기處理施設] ①糞尿處理施設 및 쓰레기處理施設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基準計劃 및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糞尿處理業 또는 쓰레기處理業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許可를 받은 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또한 같다.

③糞尿處理施設 및 쓰레기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④環境廳長 또는 市長·郡守는 糞尿處理施設 및 쓰레기處理施設의 유지·管理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設置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施設의 사용정지를命할 수 있다.

第15條 [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등의 設置]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共同住宅團地 기타 이에 準하는 地域 내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建物 기타 施設物에는 單獨 또는 共同으로 污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建物 기타 施設物에는 糞尿淨化槽를 設置하여야 한다.

③大統領令이 정하는 畜業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置者는 그設置工事を 완료한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의 竣工検査를 받아야 한다.

⑥環境保全法 第15條의 2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로서 同法 第15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동일事業場에서 排出되는 糞尿·生活下水 또는 畜產廢水와 廢水를併合處理하는 防止施設을 設置한 事業場의 경우에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⑦第1項 내지 第3項의 规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置基準 기타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등의 管理] ①污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は 그 施設의 内部清掃를 하는 등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당해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②市長·郡守는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產廢水淨化施設이 그 設置基準 또는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管理되는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施設의 改修·사용제한· 사용금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③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상의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が 그 施設의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하여 第45條의 规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고도 内部清掃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을 準用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徵收할 수 있다.

④市長·郡守는 所屬職員으로 하여금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및 畜產廢水淨化施設이 設置된 建物 기타 施設物에出入하여 그 管理狀態를 檢查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出入·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7條 [一般廢棄物處理施設 設計·施工業] ①糞尿處理施設·쓰레기 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은 第3項의 规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가 아니면 設計·施工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長의 승인을 얻어 設計·施工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事業場을 경영하는 者가 자기의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糞尿 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糞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 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2. 建築主가 자기의 建築物의 汚水淨化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3.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 但書의 경우 環境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③糞尿處理施設·쓰레기 處理施設 또는 汚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糞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營業地域을 管轄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第12條의 规定은 第3項 및 第4項의 规定에 의한 設計·施工業의 登錄에 이를 準用한다.

第18條 [糞尿淨化槽製造業] ①糞尿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環境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第12條의 规定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糞尿淨化槽製造業登錄에 이를 準用

한다.

③糞尿淨化槽 製造業者は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構造·規格 및 性能에 관한 基準에 적합하게 糞尿淨化槽를 製造하여야 한다.

第19條 [登録의 取消 등] ①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은 第1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製造業者が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할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5項 및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2條第1號 내지 第3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것이 判明된 때
 3. 登錄을 한 후 1年 이내에 營業을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年 이상 休業한 때
 4. 第17條第3項·第4項 또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5.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때
 6. 設計·施工業者가 그 設計·施工을 不實하게 하거나 都給받은 工事を 一括하여 下都給한 때
 7. 糞尿淨化槽 製造業者が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하여 不實하게 糞尿淨化槽를 製造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 ②第13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第1號에 의한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의 정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0條 [登錄取消 또는 營業停止된 設計·施工業者の 繼續工事] ①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

停止處分을 받은 者는 그 處分前에 체결한 契約分에 한하여 당해 工事의 設計·施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廳長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者를 施工監理者로 지정하여 工事を 監理·監督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施工을 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設計·施工을 완료할 때까지는 이 法에 의한 設計·施工業者로 본다.

第3章 產業廢棄物

第21條 [產業廢棄物排出業者の 義務 등] ①產業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하는 產業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產工程에 있어서의 技術開發 및 再生·이용 등의 方法으로 產業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3. 產業廢棄物과 一般廢棄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事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保全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事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產業廢棄物의 発생량, 再生·利用狀況, 處理實績 등을 記錄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第22條 [產業廢棄物의 回收措置] ①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販賣 등에 있어서 그 製造·加工·販賣 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 등이 廉棄物로 되는 경우 그의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環境廳長 또는 市·道知事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品·材料·容器 등이 環境保全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

한 特定有害物質이 含有되어 있거나 製品이 多量으로 製造・加工・販賣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製品・材料・容器 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의 그回收 및 적정한 처리방법을 告示하고, 그 製品・容器 등의 製造・加工・販賣業者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道知事が 告示를 하거나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環境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23條 [產業廢棄物의 처리] ①事業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產業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许可를 받은 者(이하 “產業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 第2項의 规定에 의한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產業廢棄物을 처리하는 者 또는 第3項의 规定에 의하여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의 產業廢棄物을 委託處理하여야 한다. ②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다른 사람의 產業廢棄物을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國家, 市・道 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者는 產業廢棄物의 廣域處理를 위한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이하 “公共處理施設”이라 한다)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规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에의 委託處理에 관한 手數料 기타 委託處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產業廢棄物處理業] ①產業廢棄物의 處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등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廳의 许可를 받아야 한다. 许可받은 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環境廳長은 產業廢棄物處理業者에 대하여 營業區域을 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③環境廳長은 產業廢棄物의 発生량과 產業廢棄物處理業者의 地域의 分布 등을 고려하여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许可를 제한할 수 있다.

④第12條 및 第13條의 规定은 第1項의 规定에 의한 许可와 许可의 取消 등에 이를 準用한다.

第25條 [產業廢棄物의 處理申告] 事業者・産業廢棄物處理業者 기타 產業廢棄物을 처리하는 者는 產業廢棄物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市・道知事에게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產業廢棄物의 発生지와 處理場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が 다를 경우에는 発生지 및 處理場所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각각 申告하여야 한다.

第26條 [產業廢棄物處理施設] ①產業廢棄物處理施設은 第8條의 规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基本計劃 및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한다.

②產業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第24條의 规定에 의하여 產業廢棄物處理業의 许可를 받고자 하는 者 및 產業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 중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產業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管理基準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管理하여야 한다.

④環境廳長은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의 유지・management가 第1項 및 第3項의 规定에 의한 設置基準 및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필요한 개선을 命하거나 期間을 정하여 당해 施設의 사용정지를 命할 수 있다.

第4章 營業者 등에 대한 指導·監督 등

第27條 [技術管理人]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management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스스로 技術management를 하는 경우와 技術management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management代行契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技術management人的資格·management代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 [廢棄物處理擔當者 등에 대한 教育] ①環境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 등에 대하여 그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教育을 실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한 教育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社會部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帳簿의 記錄·보존] 第10條第4項의 规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者, 第11條의 规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23條第2項의 规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者, 第23條第3項의 规定에 의한 公共處理施設의 設置·運營者 및 第24條의 规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業者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處·收集量·處理狀況 등을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第30條 [休業·廢業 등의 申告] 第11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業者, 第17條第3項 또는 第4項의 规定에 의한 設計·施工業者, 第18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畜尿淨化槽製造業者 및 第24條第1項의 规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業者는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廢業한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登錄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31條 [보고·検査] ①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이 法의施行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事業者, 第30條에規定된 營業者 및 第10條第4項 또는 第23條第2項의 规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에 대하여 廢棄物의 발생 및 처리, 再生·이용, 處理施設의 management,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計·施工, 畜尿淨化槽의 製造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命하거나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事業所 또는 事業場 등에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 등을 檢查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规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者는 그 身分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第32條 [廢棄物處理에 관한 措置命令] 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7條의 规定에 의한 處理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廢棄物이 처리된 때에는 그 處理者에 대하여 그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33條 [聽聞] 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13條·第19條 또는 第24條第4項의 规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나 營業의 정지를 命하고자 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에게 意見陳述의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 또는 그 代理人 기타 利害關係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章 補 則

第34條 [產業廢棄物의 輸入制限要請] 環境廳長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產業廢棄物의 輸入 을 제한하여 줄 것을 商工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第35條 [家畜飼育의 제한 등] ①市長·郡守는 生活環境의 보전 및 國民保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地域을 지정하여 家畜의 飼育를 제한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는 家畜의 飼育으로 인하여 生活環境의 보전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家畜의 飼育者에 대하여 畜舍의 移轉 기타 危害의 제거 또는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畜舍의 移轉을 命하고자 할 때에는 6月 이상의 移轉猶豫期間을 주어야 하며, 移轉에 따른 부지 알선 등 적절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36條 [糞尿使用의 제한] ①特別清掃地域안에서는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市長·郡守는 特別清掃地域에서 營農者로 하여금 糞尿를 肥料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 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하게 糞尿를 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7條 [廢棄物處理事業調整] 環境廳長 또는 道知事은 第 4條第 3項 또는 第 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 간의 廉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廉棄物理立施設 등 廉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保全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에 勸告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地方自治團

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8條 [國庫補助] 國家는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다음 각號의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

1.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
2. 環境保全法 第 2條第 13項의 規定에 의한 特定有害物質이 포함된 產業廢棄物의 處理施設 設置에 필요한 費用

第39條 [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市·道知事은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管轄區域안에서의 廉棄物의 處理實績을 다음해 2月末까지 環境廳長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40條 [許可 등의 手數料] 第 11條第 1項, 第 17條第 3項 또는 第 4項, 第 18條第 1項 및 第 24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하고자 하는者は 保健社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41條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廉棄物處理施設, 쓰레기積換場, 公衆便所 기타 公衆衛生施設의 優良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保健社會部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42條 [施行令] 이 法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罰則

第43條 [罰則]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11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麝尿處理業 또는 쓰레기處理業을 한 者
 2. 第14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麝尿處理施設 또는 쓰레기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污水淨化施設을 設置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4. 第17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麝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 또는 污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한 者
 5. 第18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麝尿淨化槽의 製造를 業으로 한 者
 6. 第24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의 치리를 業으로 한 者
 7. 第26條第2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麝尿處理業 또는 쓰레기處理業許可를 받은 者
 3. 第11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麝尿收集・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淨化槽清掃業을 한 者
 4. 第11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麝尿處理業・쓰레기處理業의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5. 第14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

항을 變更한 者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3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7. 第17條第3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8. 第17條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麝尿淨化槽 또는 畜產廢水淨化施設의 設計・施工을 業으로 한 者
 9.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麝尿淨化槽製造業의 登錄을 한 者
 10. 第18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業許可를 받은 者
 12. 第24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產業廢棄物處理業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13. 第26條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사항을 變更한 者
 1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 ③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 이하의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치리한 者
 2.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一般廢棄物을 치리한 者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麝尿收集・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 淨化槽淨化槽清掃業許可를 받은 者
 5. 第11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麝尿收

- 集・運搬業, 쓰레기收集・運搬業,淨化槽清掃業 許可事項을 變更한 者
 6. 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料金을 받은 者
 7. 第13條(第2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 중에 營業을 한 者
 8. 第1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9. 第15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糞尿淨化槽 또는 奮產廢水淨化設施을 設置할 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10. 污水淨化設施에 관한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7條第4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糞尿淨化槽・奮產廢水淨化設施의 設計・施工業登錄을 한 者
 12. 第17條第4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登錄事項을 變更한 者
 13.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 중에 營業을 한 者
 14.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再生・이용을 目的으로 產業廢棄物을 처리한 者
 17.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8.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을 두지 아니한 者
 19.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第44條 [兩罰規定] 法人の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별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43條 각 해당項의 罰金刑에 懲한다.

第45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一般廢棄物을 버린 者
 2. 第11條第4項 또는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制限 또는 조건에 위반한 者
 3. 糞尿淨化槽 및 奮產廢水淨化設施에 관한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6條第4項 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檢查를 거부・기피・방해한 者
 5.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6.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되지 아니한 者가 製造한 糞尿淨化槽를 판매한 者
 7. 第21條第1項第3號, 第21條第3項, 第25條, 第29條 또는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1. 第9條第3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嫌工検査를 받지 아니하고 污水淨化設施・糞尿淨化槽・奮產廢水淨化設施을 사용한 者
 4.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容量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污水淨化設施・糞尿淨化槽 또는 奮產廢水淨化設施의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者
 5.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를 肥料로 사용한 者
- ③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

理容量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汚水淨化施設・糞尿淨化槽 또는 廉產廢水淨化施設의 管理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한 者에 대하여는 20만원 이하의 過怠料를 課한다.

第46條 [過怠料의 賦課・徵收 등] ① 第45條의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管別로 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賦課・徵收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廳長,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일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의 規定은 公布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法律의 廢止 및 改正]

① 汚物清掃法은 이를 廢止한다.

②~④ <해당 法律에 整理>

⑤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汚物清掃法 또는 그 規定이나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8章(第49條의3 내지 第52條의3)의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 [營業許可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汚物清掃法 및 環境保全法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표의 左쪽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은 이 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오른쪽 란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環境廳長은 產業廢棄物處理業者에 대하여 營業區域을 제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污物清掃法 또는 環境保全法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
污物清掃法 第11條 의 規定에 의한 汚物處理業 許可	第11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 處理業 許可
污物清掃法 第19條 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 등 의 設計・施工業 登錄	第17條第3項 의 規定에 의한 糞尿處理施設 등의 設計・施工業 登錄
污物清掃法 第19條 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設計・ 施工業 登錄	第17條第4項의 규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등의 設計・施工業 登錄
污物清掃法 第20條 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製造業의 登錄	第18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糞尿淨化槽 製造業 登錄
環境保全法 第50條 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處理業 許可	第24條第1項 의 規定에 의한 產業廢棄物 處理業 許可

第4條 [污物清掃法등에 의한 處分 및 계속증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汚物清掃法 및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8章(第49條의3 내지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전에 행한 汚物清掃法의 위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